#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 심 사 결 과

의 안 명	처리결과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원안가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부 결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원안가결
장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주 요 내 용

- 1.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9. 3. 19.
  - 제 안 자 : 김미순 의원 대표발의(김미순, 김회식 의원)
  - 제안이유
  - 장성군의회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겸직신고, 영리 거래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시켜 지방의회 신 뢰를 제고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겸직신고 관련
  - •신고기간 확보를 위해 법정 기한 내에 신고, 관련 서식 활용
  - 겸직하는 것이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 위반 시 사임권고 실시
  - 겸직신고서 양식을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파악
  - •미신고, 허위 등 부정확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 수의계약 체결 관련
-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정보 요구 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 명확화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서 서식을 설정하여 정확한 정보 취득함.

#### - 징계 기준 설정

-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등에 대한 징계 등 사후통제 방안을 규정
- · 징계사유별로 징계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4. 2.)

- 2.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3. 19.
  - 제 출 자 : 김회식 의원 대표발의(김회식, 김미순 의원)
  - 제안이유
    -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 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제기
  - 의원 국외 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 필요
  - 주요내용
  - 규칙명 변경
    -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모두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 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 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의장이 위촉
    -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전에서 출국 30일전까지 제출로 변경

-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 기준 구체화
-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

#### - 사후관리 강화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 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 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 구체적인 환수금액 및 환수기한 등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4. 2.)

#### 3.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3. 19.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

■ 제안이유

- 국(局) 간 업무량을 조정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솔하기 위하여 기구를 정비해 조직관리·운영코자 함.

#### ■ 주요내용

- 경제건설국 환경위생과 ⇒ 행정복지국 이관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4. 2.)

#### 4.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3. 19.

■ 제 출 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

■ 제안이유

-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효도권 지원사업이 기존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공중목욕장 운영"과 같이 제정되어 있어 사업 간의 기준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공중목욕장 운영"과 분리 후 전부 개정코자 함.

####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 "이용권" → "효도권"으로 명칭 변경
- 효도권 지원기준 : 월별 지원매수 삭제
- 세부기준 : 「장성군 효도권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제정 명시
- 토론요지 및 수정안 내용
- 효도권의 지급은 군수가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며, 제4조(지원기준)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삭제함.
-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4. 2.)
- ※ 수정안은 별첨 참고

#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4조(지원기준)에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삭제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기준) 효도권은 제3조에	제4조(지원기준) 효도권은 제3조에
서 정한 나이에 이르는 날의 다음	서 정한 나이에 이르는 날의 다음
달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	달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
다. <u>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u>	다.
따로 정한다.	

#### 5.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3. 19.

■ 제 출 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 제안이유

- 노인 및 장애인 등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효도권사업과 함께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사용했으나, 사업 간의 구분 및 내용의 모호함으로 인해보완하여 별도 분리·제정코자 함.

- 공중목욕장 설치 목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9조)
- 공중목욕장 운영관리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9조)
- 공중목욕장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제25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4. 2.)

### 6.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3. 19.

■ 제 출 자 : 장성군수(문화관광과장)

■ 제안이유

- 장성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관광객 유치 지원 등(안 제4조)
- ·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 ·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 또는 홍보·판매하는 경우
-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를 유치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광객 유치 지원 제외(안 제5조)
- 지원 사업(안 제6조)
  - 관광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 중앙정부 또는 도 주관 축제 개최 지원 사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관광업무 위탁 및 대상 업무 등(안 제7조 ~ 제8조)
  - 국내 외 관광 관련 홍보관 및 박람회
  -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관광 종사자 교육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9조 ~ 제10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4. 2.)

#### 7.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3. 19.

■ 제 출 자 : 장성군수(문화관광과장)

#### ■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의 체육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조례를 제정함.
- 체육진흥계획 수립과 체육진흥 사업 시행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확화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체육진흥 조례 목적(안 제1조)
-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안 제2조)
- 체육진흥 사업의 시행(안 제3조)
  -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지원 계획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대회 유치 및 개최 계획
  - 지역·전라남도·전국규모·국제교류 체육행사 유치 및 개최 계획
  -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계획
- 보조금 지원대상(안 제4조)
  -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군민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 지역·전라남도·전국규모·국제교류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 생활체육 교실 및 군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경비

-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 외 교류활동 사업
- 레저스포츠 교육 · 체험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 사전 협의, 지도감독, 포상(안 제5조~안 제8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3. 19.)

####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제출일자 : 2019. 3. 19.

■ 제 출 자 : 장성군수(재무과장)

####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장성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문화예술회관 앞 파크골프장이 공설운동장 건립부지에 포함되어 공설운동장 공사추진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이전 부지를 매입하여 파크골프장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 나. 앵무새 상설 체험 전시관 조성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황룡강 내에 방문객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반려새(앵무새 등) 체험관을 설치하여 사계절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다. 노인회관 신축사업

어르신들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노인회관을 신축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회의 활 성화 유도와 실버복지 1번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 토론요지

- 금번에 상정된 3개 사업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집행부가 선정한 현 후보지 외에 다른 후보지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 사업의 타당성, 각 위치별 교통 등 접근성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변경안 3건에 대하여 부결함.
- 의결결과 : 부 결(제2차 본회의 / 2019. 4. 2.)

#### 9.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3. 25.

■ 제 출 자 : 이태신 의원 대표발의(이태신, 김회식 의원)

#### ■ 제안이유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서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미세먼지 피해저감 사업 지원(안 제6조)
  -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사업
  -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대기측정망 설치・운영(안 제9조)

-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수 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대기측정망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음.
- ·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주민에게 공개 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를 하 여야 함.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 자치단체 및 지역 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4. 2.)

#### 10.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3. 19.

■ 제 출 자 : 장성군수(산림편백과장)

■ 제안이유

-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과 소득증대 도모함.

- 임업인 권익 보호, 임업 경쟁력 강화, 소득증대 등 장성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임업관계자 · 산림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의 지원사업
  - •임산물 공동방제, 부산물 지원사업
  - ·기술교육 · 연수 · 견학에 필요한 경비
  - 산림 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등)지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4. 2.)

#### 11. 장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3. 19.

■ 제 출 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공동시설 외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주 민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 소통을 위한 시설과 주민운동시설 등 공동체 활동 시설을 공동이용 시설로 명시(안 제4조)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 내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 도록 함.(안 제6조)
-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전담조직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인적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17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안 제18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4. 2.)

#### 12.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 제출일자 : 2019. 3. 19.

■ 제 출 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제안이유

-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전원주택단지 887세대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2008. 12. 16.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3. 10. 4.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하였으나 10년째 사업 추진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에 따라 공영개발 방식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하여 201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전남개발 공사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의 신규 투자 제한에 따라 사업 참여를 포기하였고, 2014. 2. 21. 전남 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하였음.
- 전남개발공사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검토에 따른 분양가 하향을 위하여 우리군에서 철탑이설, 진입도로 잔여부분 개설,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지원과
- 준공 3년후 미분양 토지를 군에서 매수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검토한 결과 군에서 미분양 토지 매수 조건에 대해 수용 불 가능한 사항으로 결론되어 사업 시행자 지정이 중단되었으며,
- 10년째 사업 추진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대상지에 편입되는 주민들은 개발행위 허가제한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생활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게 발생되는 상황임.

- 2017년 우리군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극적인 개발 유도 정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시행에 대해 협의를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2019. 3. 13.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지역개발협력 기 본협약을 체결하였음.
- 이에 따라, 우리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협의를 진행하고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양가 절감 대책으로 철탑 지중화와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을 우리군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되어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 주요내용

-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 업무 분담에 따라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채무부담 비용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음.

#### - 분양가 하향을 위하여 LH에서 우리군 요청사항 -

항 목		7.0	지원요청 사업(억원)			비고
항	=	규 모	합계	국비	군비	U 14
합	계		344	108	236	
철 지 중	탑 등 화	4기, 1.1km	190	0	190	4 ~ 5년 소요 사업비 3 ~ 5회 분납 * 2017년 산출 기초
하 처 리	수   장	1,300톤/일	154	108	46	3년 소요(설계,공사등) 1,500세대 기준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4. 2.)

#### 13. 장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3. 19.

■ 제 출 자 : 장성군수(농업축산과장)

■ 제안이유

-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운영 및 지원 근거마련
- 이상기후 및 돌발병해충에 대한 피해 최소화로 농산물 생산의 안정성 확립
  - 주요내용
- 방제대상 (안 제2조)
  - ·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
- 주요임무 (안 제6조)
  - ·장성군내 병해충예찰·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
  -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4. 2.)

#### 1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 2019. 3. 19.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

■ 제안이유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294억원의 가용 재원이 새로 발생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증액 또는 조정되었고, 일부 신규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그 동안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함.

#### ■ 주요내용

- 규 모 : 430,714,000천원

- 회계별

· 일반회계 : 419,636,846천원 · 특별회계 : 11,077,154천원

-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회계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합 계	430,714,000	401,000,000	29,714,000
일반회계	419,636,846 390,237,534		29,399,312
특별회계	11,077,154	10,762,466	314,688

#### ■ 심사결과

- 일반회계 세입예산 : 원안가결

- 일반회계 세출예산 : 수정가결

- 제출 예산액 : 419,636,846천원

- 삭 감 액 : 5,590,000천원

- <u>수정 예산액 : 414,046,846천원</u>

-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 원안가결

■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4. 2.)

※ 수정내역은 붙임 참고

#### 별첨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내역

1. 세 입: 430,714,000천원

가. 삭감(일반+특별): 해당없음

나. 증액(일반+특별)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 요구액	심	사 결	OLTON	
	(제출 예산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인정액
계	430,714,000	-	_	_	430,714,000
일반회계	419,636,846	_	_	_	419,636,846
특별회계	11,077,154	_	_	_	11,077,154

라. 삭감조서 : 해당없음

마. 증액조서 : 해당없음

2. 세 출: 430,714,000천원

가. 삭 감

1) 일반회계: 5,590,000천원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증 액

1) 일반회계 : 해당없음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 : 천원)

등 게 ㅂ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이저에
회계별	(제출 예산액)	삭감액	증액	순삭감액	인정액
٦ آ	430,714,000			0	430,714,000
일반회계	419,636,846	5,590,000	5,590,000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0	419,636,846
특별회계	11,077,154	0	0	0	11,077,154

# 라. 삭감조서 : 붙임과 같음

## 1) 일반회계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계	6 건	5,590,000	5,590,000	
401-01	노인회관 신축	2,000,000	2,000,000	0
401-01	파크골프장 토지매입비	1,000,000	1,000,000	0
401-01	청운지하차도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1,300,000	1,300,000	0
401-01	옐로우게이트 조형물 개선사업	60,000	60,000	0
401-01	앵무새 공원체험 전시관 부지매입비	1,030,000	1,030,000	0
401-01	마을하수처리시설 LED등기구 교체 및 CCTV	200,000	200,000	0

## 2) 특별회계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해당 없음	_		

# 마. 증액조서

- 1) 일반회계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 **5,590,000천원(증)**
- 2) 특별회계 : 해당없음